

「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건 서

(이용균 의원)

- ☐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입니다.
- 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2390호 「서울특별시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상위법인 「수도법」 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대상에 대하여,
조례에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
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물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
것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이에 따라 설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, 절수
설치 등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
공감하며,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- ☐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